

군산시 공고 제2011-1435호

공 고

“군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 운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기금의 재원 : 옥외광고사업 수입금외
- 기금의 용도 : 광고물의 정비등
- 기금의운용 관리 : 위원회설치및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건설과(전화063-450-4479, 팩스063-452-817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 광고물계담당자
오남인 (전화063-450-447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라북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 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과장(당연임명직), 광고물업무와 연관된 시의 과장(위촉직)
2. 시의회 의원(위촉직)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 또는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광고물 계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건설교통국장
2. 분임기금운영관 : 건설과장
3. 기금출납원 : 광고물계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는데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1 -1463호

공 고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4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표준안」에 의거

가. 공직기강 확립에 따른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의 비위 유형 중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성매매를 추가하고

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개정 법규명

●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3 주요 내용

가. 관련규정 개정(안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

- 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추가함

나. 성매매 징계기준 마련(안 별표 1)

- 1) 별표 1 징계기준 중 제7호 “다. 성희롱”에 “성매매”를 추가함

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기준 강화(안 별표 6)

- 1) 최초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받은 경우 : 경고 ➡ 경징계
- 2) 2회 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경징계 ➡ 중징계
- 3)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중징계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 및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중징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10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8번지 군산시청 총무과(전화:450-4233, FAX:450-6384)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계(450-4233)부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를”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를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로 한다.

별표 1의 징계기준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징계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u>성매매</u>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제8조 관련)

유 형 별	처리기준	비 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경징계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중징계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 및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비위를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8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한 행위로 인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처리기준에 해당하게 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기준 및 별표1의2의 징계부과금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②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_____.
제5조 【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4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제5조 【징계의감경】 ①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현행	개정안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 제 6조 및 7조에 따른 공적상 또는 창안상으로써 훈격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당시의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 훈격이 중앙행정기관장(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이상의 표창과 이에 준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4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징계기준(제2조 관련)

현행					개정안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 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 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유형					비위의 유형				
7.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7.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라.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
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 6]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제8조 관련)

현행		개정안
유 형 별		처리기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	단순 음주운전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	경 고 경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거나,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받은 경우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와 취소처분 1회를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유 형 별		처리기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경징계
<현행과 같음>		경징계 또는 중징계
<삭 제>		<삭 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2회이상 받은 경우		중징계
<현행과 같음>		경징계 또는 중징계
<삭 제>		<삭 제>
< 현행과 같음 >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 및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현행과 같음 >		

군산시 공고 제2011 - 1464호

공 고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 『지방공무원법』 상 현원이 없는 고용직공무원 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고용직 항목 폐지
-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기능직 정원채정기준을 현원기준으로 조정

2. 개정 법규명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3. 주요 내용

- ☐ 지방공무원 종류별 및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조정(안 제3조)
 -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의 “기능직·고용직” 을 “기능직” 으로 조정
 -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의 기능직공무원 “8급 22%” 을 “8급 26%” 로

“9급 27%” 을 “9급 31%” 로, “10급 31%” 을 “10급 23%” 로
조정

4.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10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총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
- ▶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8번지

군산시청

총무과(전화:063-450-4233,

FAX:063-450-6384)

-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계(063-450-6122)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및 별표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일 반 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81% 이상	16% 이내	3%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관련)****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7% 이내	26% 이내	33% 이내	26% 이내	7% 이상

비 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 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4% 이내	16% 이내	26% 이내	31% 이내	23% 이상

비 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 이내	97% 이상	10% 이내	90% 이상

비 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4.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5%	80% 이내	10% 이내	5%	—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관련) <table><tr><th>구분</th><th>일반직</th><th>기능직·고용직</th><th>별정직·정무직</th></tr><tr><td>비율</td><td>81% 이상</td><td>16% 이내</td><td>3% 이내</td></tr></table>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관련) 1. (생략) 2. 기능직 공무원 <table><tr><th>구분</th><th>6급</th><th>7급</th><th>8급</th><th>9급</th><th>10급</th></tr><tr><td>비율</td><td>4% 이내</td><td>16% 이내</td><td>22% 이내</td><td>27% 이내</td><td>31% 이상</td></tr></table>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생략) 4. (생략)	구분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81% 이상	16% 이내	3% 이내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4% 이내	16% 이내	22% 이내	27% 이내	31% 이상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관련) <table><tr><th>구분</th><th>일반직</th><th>기능직</th><th>별정직·정무직</th></tr><tr><td>비율</td><td>81% 이상</td><td>16% 이내</td><td>3% 이내</td></tr></table>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기능직 공무원 <table><tr><th>구분</th><th>6급</th><th>7급</th><th>8급</th><th>9급</th><th>10급</th></tr><tr><td>비율</td><td>4% 이내</td><td>16% 이내</td><td>26% 이내</td><td>31% 이내</td><td>23% 이상</td></tr></table>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구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81% 이상	16% 이내	3% 이내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4% 이내	16% 이내	26% 이내	31% 이내	23% 이상
구분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81% 이상	16% 이내	3% 이내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4% 이내	16% 이내	22% 이내	27% 이내	31% 이상																																				
구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81% 이상	16% 이내	3% 이내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4% 이내	16% 이내	26% 이내	31% 이내	23% 이상																																				

군산시 공고 제2011 -1429 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1년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의견제출

- 기 간 : 2011. 9. 5 ~ 9. 30(26일간)
- 장 소 : 시청 토지정보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동 지역은 시청 토지정보과
- 대 상 : 2011. 1. 1 ~ 6. 30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등
토지이동필지(1,976필지)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
- 의견제출

- * 대 상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 기재 제출

□ 의견제출 처리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토지정보과(☎450-6082)로 문의 바랍니다.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고 제2011-1442호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소룡6통) 사업 공사완료 공고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소룡6통)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1년 9월 9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소룡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 설 명	결정조서		실시계획			비 고
		폭원	연장	폭원	연장	면적	
소룡6통 도로 개설공사	소로 1-121	10	397	10	129	1,343	미개설 268m
	소로 1-124	10	585	10	219	1,917	미개설 366m
	중로 2- 34	15	336	15	127	1,989	미개설 209m
소 계					475	5,249	

3.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번 (조촌동 888번지)

나. 사업시행자의 성 명 : 군산시장 (도시계획과)

4. 사업착수 및 준공일 : 2009. 5. ~ 2011. 8. 30

5.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비치)

군산시 공고 제2011-1443호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미성동 타운입구~갈마마을간) 사업 공사완료 공고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미성동 타운입구~갈마마을간)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1년 9월 9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미성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 설 명	결정조서		실시계획			비 고
		폭원	연장	폭원	연장	면적	
미성동 타운입구~갈마마을간 도로개설공사	소로 1-280	10	1,291	10	1,040	10,400	미개설 251m
소 계					1,040	10,400	

3.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번 (조촌동 888번지)

나. 사업시행자의 성 명 : 군산시장 (도시계획과)

4. 사업착수 및 준공일 : 2004. 9. ~ 2011. 8. 31

5.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비치)